

●중소벤처기업부고시제2020-17호

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81조(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의 변경)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'경미한 사항'에 대한 변경 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20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규제자유특구의 경미한 사항 변경

① (울산) 면적추가(1건)

특구	구분	당초	변경	변경 사유
울산	면적 추가	두왕동(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) 외 두서면, 언양읍, 온산읍 여천동, 매암동, 청량면 등 실증 지역	면적 추가 (73,011㎡) -중구 증가로 15(42,730㎡) -북구 매곡산업로 35(14,094㎡) -울주군 온산읍 회학3길 38(10,783㎡) -중구 증가로 362-11(5,404㎡)	-수소모빌리티 특구사업자인 울산테크노파크 본원 및 특화센터 누락에 따른 추가 -2차 지정 역외 특구사업자 입주, 추후 특구사업자 확대에 따른 기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울산테크노파크 전 사업장에 대한 특구 면적 지정 필요 →특구 면적 51% 증가 (10%미만의 면적변경)
		특구면적 (㎡)	면적 변경 (㎡)	
		기 존	1,427,862	
		추 가	73,011	
		특구 면적	1,500,873	

부칙

1. 동 변경 내역은 고시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.

●문화재청고시제2020-18호

「문화재보호법」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130-38번지 등 1필지 119㎡를 사적 제11호 「서울 풍납동 토성」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고시하고,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20일

문 화 재 청 장

1. 고 시 명 : 「서울 풍납동 토성」 사적 추가지정

가. 대상 문화재

- 1) 종 별 :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
- 2) 소 재 지 :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
- 3) 추가지정 면적(지번별 면적조서 붙임)
 - 기존 지정면적 : 1,428필지 399,005.8㎡
 - 추가지정 : 1필지 119㎡
 - 추가지정 후 면적 : 1,429필지 399,124.8㎡

4) 지정사유

- 풍납토성 내 II권역(핵심권역 등)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

나. 관리단체 : 서울특별시 송파구(송파구청장)